

부 전 차

수 진

1972. 7. 14

계 목  
요 약

厚生良室 運京要款 支更

1. 現行要款

① 施行日 1970. 6. 15

② 要款 10冊 3,000 800 1冊 12 (國長)

2. 現行

15冊 3,000 800 1冊 7-9 冊

※ { 予算 3,000 800  
一次退更 800 800 (12冊)

발	算	10冊	3,000 800	28,650,000
算	建	15冊	3,000 800	27,150,000
				28,650,000

제238호

# 지 원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1471-	(전화번호 206)	전결규격	조 항
처리기간	결 제 자			
시행일적	시 장			
보존년한				
보	제1부 시장	협	기획관리관	조
조	보건사회국장		법무국장 (예산과장)	
기	사회과장		시민과장	
관	구로계장		법체계장 (예산1계장)	
기안책임자	장 원	72.1.11	문서관리계장	사회계장
경 유 수 신 참 조	관 안 참 조	발 신	통 계	검 인 1972-1-24
제 목	서울특별시립우생식당 운영요강 변경 (제1안) 내부결재			제
1. 서울특별시립우생식당 설치 조례 제4항의 규정예				호
의기 동식당 운영에 필요한 시립우생식당 운영요강을 심정				
운영하고 있는바				관 인
2. 결산 1972년도 예산 책정에 있어 1971년도 책정된				
15개소에 1필급식정원 3,800명과 직사부 31명을 72년도에는				발 승
식당 10개소에 1필급식정원 3,000명(5개소 800명감소)				

G 2 0 1 - 1 - 8 A

150mm X 268mm-백 상 지 50g/m<sup>2</sup>

1972. 11. 10. 송 인

(서울특별시립 우생식당 운영요강 변경)

작사부 20명(11명 감소)으로 변경되었고 또한 부식비 7원을 9원으로 인상 예산책정의 변동이 되었으나

3. 연제 광구의 급식구호 심정을 감안하여 올해 현상대로서는 감소할 수 없는 심정으로 기정된 예산중에서 줄지은 양하고 병점 소요 예산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조치할 것이며 아울러 서울특별시립후생식당 운영요강을 병점과 같이 변경 심정을 영조자 재검토 바랍니다.

(제2안)

수선 수선지참조  
제목 동 건

1. 서울특별시립후생식당 섭지로써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섭지립후생식당 운영요강을 심정운영하고 있는 바 금반 급식구호 방침 변경에 의거 일부 식당에 대한 1인급식정원이 기재조정 변경되었고 또한 부식비 7원을 9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동요강을 병점과 같이 변경운영케 되었으니 앞으로 동요강을 준수하여 식당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급식구호에 차질없도록 할 것.

집행: 서울특별시립후생식당 운영요강 1부 끝.

수신처: 서칭 2, 3, 4, 5, 6, 9

2016년 10월 20일 2차 예산 (추가 예산)

구		부		예산액	잔액
과	항목	구	항목		
교육	교육	교육	교육	8879956	
		행정	인사	1529880	인사 $380^w \times 11^m \times 366^d = 1529880$
			사무		사무 $1000^w \times 5^m \times 12^m = 60000$
			재기		재기 $300^w \times 800^m \times \frac{50}{100} = 80000$
			인		인 $1000^w \times 5^m \times 12^m = 60000$
			인		인 $2000^w \times 5^m \times 12^m = 120000$
			인		인 $600^w \times 5^m \times 12^m = 36000$
		각	각	828000	각 $10^w \times 200^m \times 366^d = 732000$
			비		비 $1000^w \times 5^m \times 12^m = 60000$

전기료

$$800^w \times 5^h \times 12^m = 48,000$$

냉난방료 138,000

수도료

$$1500^w \times 5^h \times 12^m = 90,000$$

수도기및장비

$$12,700^w \times 5^h = 63,500$$

인건비 85,100

부속시설비

$$18^w \times 5^h \times 2^g \times 120^m = 21,600$$

부속비 (5개월)

$$39.60^w \times 200^g \times 366^m = 2,904,576$$

수리  
200000) 5,978,976

부속비

$$9^w \times 8.00^g \times 366^m = 2,635,200$$

인건비

$$80^w \times 3^g \times 5^h \times 366^m = 439,200$$

서울특별시립후생식당운영총감 (안)

1. 목적

영세부등근로자및 극빈행상인으로 하여금 저임가로 주식 (극후 1기식)을 제공하여 이들의 자활향상및 생활안정및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운영방법

가. 본식당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나. 본식당은 매일 10:00에 개점한다.

다. 본식당 위치 및 1일급식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식당 위치 및 1일급식 정원 (10 개소)

구	형	식당명	1일급식		취사부 정원	위 치
			정원	환경		
중	주	상가식당	600명	500명	3인	읍치로6가 17번지
○	동	평양리동 "	200	300	2	평양리동 205외772
○	성	파장동 "	300	300	2	파장동 275번지
○	성	공호동 "	300	300	2	공호동 1265외51호
○	성	공암동 "	200	200	2	공암동 3외 72호
○		미아6동 "	200	200	2	미아동 637외150호
		미아7동 "	200	200	2	미아동 837외91호
		정남동 "	200	200	2	정남동 684외8
○	서	봉하역동 "	200	300	2	봉하역동 129외37
		공운동 "	200	200	2	공운동 48
○	영	영등포동 "	300	300	2	영등포동 469외1호
○		봉림동 "	300	200	2	봉림동 503외 3호
		석촌동 "	200	200	2	석촌동 266외2874
		사당동 "	200	300	2	사당동 150
		구로동 "	200	200	2	구로동 766외147호
계		15개소	3,800명	3,800명	31인	

다. 식사는 1일4인1기 소량분 (건편) 250그램으로 한다.

라. 분식비는 1기9원으로 한다.

바. 배식작로부 먹장수 하는 골식가군은 1기당 5원으로 한다.

### 3. 식대경수 방법

가. 식당운영계획장수한 대금은 당월 17시까지 별지서식에 의하여 당해 구청 사회복지장 책압하에 시공로에 붙임한다.

라. 판 부등 먹한 사용가 있을시는 1입을 전장할수 있다.

다. 공부입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4. 운영비 경비

가. 주 식용 양곡 및 분식(면물백정)은 본 기대 운영비는 구청장에게 배정 양할 경비계한다.

다. 식당운영계획 식대경수를 위하여 식당책임직원을 정육직원으로 지정하여 담임계한다.

라. 식당담임직원은 식당운영사항을 구청장에게 임원로서 보고하고 구청장을 별지서식에 의하여 이를 알보로 운영사항을 서장에게 위임 5입까지 본다 한다.

### 5. 종사원(취사부) 고용

가. 종사원(취사부)정원은 관식당에 2명씩을(종류3명)을 고용한다.

### 6. 이요강은 1972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1972. 2월 1일

서울특별시

(4/5)

잡수업금납부

1970년

월

일

사 의 관 장

학칙과 같이 주정식당 수업금을 납부하고, 이 영수하여  
본 장에 제출합니다.

부			납부액	수	금
과	항	목			
과수업	과수업	주정식당 수업			과수업 과수업 과수업



(4/4)

직업능력개발사업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록

1993년 1월 15일

위원장 김기현 (안)

참석위원 김기현, 김기현, 김기현, 김기현, 김기현

주요내용 1. 위원회 구성 2. 업무분장 3. 회의규칙 4. 기타

의결사항 1. 위원회 구성 2. 업무분장 3. 회의규칙 4. 기타

주요내용	1. 위원회 구성	2. 업무분장	3. 회의규칙	4. 기타
의결사항	1. 위원회 구성	2. 업무분장	3. 회의규칙	4. 기타

의결사항 1. 위원회 구성 2. 업무분장 3. 회의규칙 4. 기타

주요내용	1. 위원회 구성	2. 업무분장	3. 회의규칙	4. 기타
의결사항	1. 위원회 구성	2. 업무분장	3. 회의규칙	4. 기타

(44)

서울특별시립부속도서관 영입분

(영입분)

1971년 영입분

서울특별시립부속도서관 영입분

장서 (인)

1. 장서 (인) 수량

구분	영입분	수량	종류	인원	수량	구분
총계						

2. 장서 (인) 수량

구분	영입분	수량	종류	인원	수량	구분
총계						

시립후생식당 운영요강



1. 목적

극빈영세행상인 및 영세부등근로자 또는 극빈영세민으로 하여금  
 연가보주식(곡수1기식)을 제공하여 이들의 자활향상 및 생활  
 안정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운영방법

- 가. 본식당은 구정장 및 시립사업소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 나. 본식당은 매일 09:00시에 개점한다.
- 다. 본식당 위치 및 1일급식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식당 위치 (10기소)

식당명	소지지
동대문후생식당	동대문구 정량리동 205의 772
마장동	성동구 마장동 275
금호동	성동구 금호동 3가 1265의 51
성북	성북구 종암동 3의 72
삼양동	성북구 미아동 637의 150
북악현동	서대문구 북악현동 6-10
영등포	영등포구 영등포동 463
봉천동	영등포구 봉천동 502
남대문	시립남대문 합숙소내
본관	서대문구 영등포

2) 1일 급식정원 : 각 식당 300명

- 라. 식사는 1인1기소 배분(권면) 300그램으로 한다.
- 마. 부식비는 1인1기 5원으로 한다.
- 바. 떡식자로부터 정수하는 급식가격은 1기당 5원으로 한다.
- 빠. 식사에 필요한 주식용 양곡은 보건사회부 부담으로 하고  
 기타 운영비는 서가 부담한다.

3. 식당 정수 방법

- 가. 식당은 영예식 정수한 데금은 당일 17시까지 별지 시식에 의하여 당해구청의 사회과장(사업소장) 재인하에 시금함에 붙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1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나. 공휴일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운영비경리

- 가. 주석음 양극 및 부식비 등은 기타운 영지능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지정영달 경리케한다.
- 나. 식당운영 및 식당정수를 위하여 식당 책임 직원은 정규 직원으로 지정하여 담임케한다.
- 다. 식당 담임직원 은 식당운영사항을 구청장에게 월보로서 보고하고 구청장 및 사업소장은 이를 월보로 운영사항을 시장에게 월월 5일까지 보고한다.

5. 종사원(취사부) 고용

- 가. 종사원정원. 각식당에 취사부 2명씩을 고용한다.

6. 이 요강은 1970.8.15부터 시행한다.

1970, 8,

서 울 구 범 시 장